

『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의 운영과 관련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관리해 왔으나, 현실화 및 전문화의 필요로 총 4개부문(기금, 예산·회계·지출·채권, 계약, 재산물품관리)으로 분화되어(2005.12.31)
- 「지방재정법」 총12장중 제10장부문의 재산물품관리사항에 대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(법 제9장, 제99조, 령 제8장 96조 및 부칙)이 새로이 제정되어 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시행 조례로 개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대부료의 요율 적용시 「산림법」 준용조항 삭제(제28조)
- 대부료 특례조항 범위 확대(제34조)
 - 전년 대비 10%이상 증가시 감액조정사항 확대
- 대부료납기 : 2차년도부터는 선납제 시행(제35조)
- 수의계약 매각범위 축소(제40조)
 - 농경지 매각 대상 및 규모 축소, 삭제

4. 참고사항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」 외
-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 시달
 - 경북도 재정과-2022(’06.1.26)호와 관련임

5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가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의 근거로 관리해 왔으나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2006. 1. 1부터 시행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법령과 행정자치부의 표준 개정안에 부합되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.
-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변경 및 삭제, 조문일치 등으로 내용일부를 신설 및 수정 삽입하고, 대부료의 효율적용 시 산림법 준용조항 삭제, 대부료 특례조항 범위확대, 대부료 납부기간은 2차년도부터는 선납제 시행 및 분할납부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, 수익계약 매각범위 축소 등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전부개정 안입니다.